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9월 6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0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

제22조 [별표2-1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-1]

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(제22조 관련)

임용하려는 결원 수	승진심사 대상 범위
2명 이하	<u>4배수</u>
3명 이상	<u>3배수</u>

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성과관리제 평가 종료 후 일정기간(10일 이내) 동안 희망자에 한 해 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태 권 (3 9 0 - 7 6 1 5)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구비서류) <생략> 1. <생략> 2. <생략> 3. <생략> 4. <생략> 5. <생략> 6. <생략> 7. <생략> 8. <생략> 9. <생략> <u>10. <신설></u>	제11조(구비서류) <현행과 같음> 1. <현행과 같음> 2. <현행과 같음> 3. <현행과 같음> 4. <현행과 같음> 5. <현행과 같음> 6. <현행과 같음> 7. <현행과 같음> 8. <현행과 같음> 9. <현행과 같음> <u>10.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</u> <u>11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</u>
제37조(성과관리제) ① 성과관리제는 년 1회 운영한다. ② 성과관리제 시행방법은 사장이 정한다. <u>③ <신설></u>	제37조(성과관리제) ① 성과관리제는 년 1회 운영한다. ② 성과관리제 시행방법은 사장이 정한다. ③ <u>성과관리제 평가 종료 후 일정기간(10일 이내) 동안 희망자에 한 해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u>

현 행

[별표 2-1]

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(제22조 관련)

임용하려는 결원 수	승진심사 대상 범위
2명 이하	<u>3배수</u>
3명 이상	<u>2배수</u>

개정안

[별표 2-1]

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(제22조 관련)

임용하려는 결원 수	승진심사 대상 범위
2명 이하	<u>4배수</u>
3명 이상	<u>3배수</u>